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송 · 변 전 설 비 주 변 지 역 의 보 상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1월)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지원금 단가가 고정되어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4년 법령 제정 이후 '23년 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률(근거: 통계청) 18.5%를 지원단가에 반영, 상향 조정 (별표 2 제1호다목)

구 분	송전선로						변전소	
전 압	345kV		500kV		765kV		-	
현 행	9,100(원/c-m)		20,000(원/c-m)		36,000(원/c-m)		119,600(원/MVA)	
조 정 결 과	조정액	인상액	조정액	인상액	조정액	인상액	조정액	인상액
	10,784	1,684	23,700	3,700	42,660	6,660	141,726	22,12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784(원/c-m)	23,700(원/c-m)	42,660(원/c-m)	141,726(원/MVA)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연 락 처	(044) 203 - 3931